

차량 화재 시 올바른 대처법

1.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안전한 장소에 정차



2. 엔진을 정지하고 차량에서 내려 소화기로 초기 화재 진압

※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화재 이외에는 소화기로 진화



3.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한 후 119에 신고



'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이상 차량이라면

차량용 소화기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21.11.30. 개정)
본격 시행에 따라 12월부터 자동차 검용 소화기 비치



차량용 소화기 구매 및 설치를 위한 Q&A

Q1 모든 차량에 적용되나요?

'24.12.1. 이후 자동차를 제작·수입 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이전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
'24.12.1. 이전 구매·등록된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음

Q2 어디서 구매하나요?

소방시설 판매업체, 인터넷 등을 통해 구매 가능

Q3 차량 어디에 비치하면 좋을까요?

비치장소는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으나, 화재 발생시 운전자 또는 탑승자가 사용하기 용이한 위치에 설치 또는 비치
예 운전자가 사용하기 편리한 위치, 트렁크 등

Q4 어떤 소화기를 구매해야 하나요?

본체 용기표면에 '자동차 전용'이라 표시된 제품을 아래 차량 종류별 소화기 규격 및 수량에 맞게 구매
※일반 분말 및 에어로졸식 소화기는 법정 차량용 소화기가 아님

차량 종류	규격	소화기 규격 및 수량
승용	5인승 이상	1단위(0.7kg) 1개
승합	경형(1000cc 미만)	1단위(0.7kg) 1개
	소형(15인승 이하)	2단위(1.5kg) 1개 or 1단위(0.7kg) 2개
	중형(16~35인승)	2단위(1.5kg) 2개
	대형(36인승 이상)	3단위(3.3kg) 1개 + 2단위(1.5kg) 1개
화물·특수	중형(1톤 초과~5톤 미만)	1단위(0.7kg) 1개
	대형(5톤 이상)	2단위(1.5kg) 1개 or 1단위(0.7kg) 2개



차량용 소화기, 이렇게 관리해 주세요

